

환경보전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및 건의사항

* 여기에 기재된 검토 및 건의사항은 전국에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환경처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구분	관련 규정	검토의견(문제점)	건의사항
구체성이 없는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2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특정유해물질의 단속기관이 불명확함 기본부과금 적용에서 대기 1종 사업장일 경우 -가령 보일러 1ton / HR 시설이 적발되어도 무조건 400만원인데 3종 업체일 경우 보일러 2ton / HR 시설이 적발되면 오염 배출량이 많아도 200만원으로 불합리함. 오염물질이 치명적인 특정 유해물질이든 단순 SS 등의 물질이든 피해 영향의 강약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기본부과금이 적용됨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가 IPPM만 되어도 상당량 초과됐을시와 기본부과금이 같음.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일때 환경처관할로 국한 중별적용도 있지만 적발시설벌의 참작이 되어야 할 것임. 초과정도도 참작하여 기준을 분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1.0% 이상 초과시 기본부과금, 1.0% 이하시는 2회 연속일때 기본 부과금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지 13호 서식	서식 내용에서 소음·진동 발생원별의 구분이 없고 공장전체의 소음·진동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재사항의 기준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것임. 따라서 기재내용의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타당함.	소음·진동 발생원의 기재사항이 있어야 점검이 가능하며 운영기록을 유지할 수 있음.
현실성이 없는 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2조 1항 별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6	지방환경청장 관할사업장중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한 공장의 구분이 수질이나 대기 업종중에서 극히 미소한 부분에서라도 배출소지가 있으면 허용기준치이하라도 관할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사실상 대다수 공장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문제점 : (1) 같은 구역안이라도 관할관서가 달라 관리의 효율성이나 일괄성이 없음 (2) 지방환경청의 업무과다로 인해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질지 우려됨	공단과 수출자유지역 이외에는 특정유해물질의 유무에 관계없이 아예 시·도 관할로 조정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의 규모(배출량 등)를 타당성 있게 구분하여 줄것 지방환경청은 지도단속권만행하고 시·도에서는 행정관할하도록 조정하는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음·식료품 제조 가공시설중 혼합시설-불명확, 불필요함	삭제 요망
형평성이 없는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7의 2입자상 물질중	전기아크로, 용광로, 용선로, 배소로 등의 기준이 종전 200mg / Sm ³ 에서 30 및 70mg / Sm ³ 으로 일시에 대폭강화되어 기존시설의 일시 적용과 적용에서 어려움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	기준을 단계별로 낮추거나 전기 아크로와 용광로 등의 기준을 같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소음·진동규제법 제62조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성실한 관리인이 범법자가 될수 있음. 예를 들어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적절한 시설의 미비 및 부족한 처리비용으로 인해 처리가 불가하여 누차에 걸친 개선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않아 범법기준치 초과로 적발되었을때 정상 참작없이 관리인이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함.	책임한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적절한 사전·사후조치가 있을시 구제방안이 모색되어야 소신껏 환경관리에 임할 수 있음. 일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가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 되어 있음) *산업안전 보건법에는()안과 같은 단서 규정이 있음

구분	관련 규정	검토의견(문제점)	건의 사항
누락 또는 중복된 규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5	사업장별 배출시설관리인의 자격 기준에서 수질·대기 복수자격 소지자의 적용기준이 누락되었음(중전 환경보전법은 적용되었음) 작업시간의 적용에서 (1일 평균 17시간 이상)오염배출시설은 12-13시간이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몇개시설만 18시간 가동시 관리인의 추가배정의 문제점 또 수질배출시설은 12시간 대기배출시설은 18시간인 경우에 수질도 관리인의 추가 배정이 필요한 것인가하는 문제점 대두	복수자격 소지자 적용기준 규정삼입 1일 평균 가동시간은 오염 배출시설 가동시의 경우로 한정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별로 적용구분을 정해야 함
명확하지 못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 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불소화합물, 염소 및 그 화합물 등의 명확한 개념이 없어 종류는 많은데 적용상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음	오염물질에서 각종 "화합물"의 명칭이 붙은 것은 그 개념을 정하여 마찰이 없도록 함
법령 체계상 비합리적인 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자가 측정 항목 및 방법)	배출구별에서 기타로 규정되어 있는 섬유제품 제조 관련 시설로서 선별(홀타)시설은 일정한 배출구가 없어 여과 집진장치를 통하여 대기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현장에서만 순환하는데 따른 자가측정 여부.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므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
	수질 시행규칙 제25조 검사 조항	측정기관이 분산되어 있음. 단속측정치의 이의조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측정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을 요함 이의 제기시 환경관리공단으로 제측정할 수 있도록 요망
		1개 사업장에 다른 제조공정이 있을시 동일한 배출시설이라도 제조공정 구분에 따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과 되지 않는 시설이 있음	과기와 같은 경우가 각 사업장마다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단속시 혼란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출시설 인허가 지침서를 별도 만들어 주기 바람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16비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 별표 25 비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2 비고	방지시설업의 기술인력중 기술사대체요원이 기사 1급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인 자로 가름하고 있는데 조건이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면 기사1급 자격소지자는 석사학위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사학위로 조건을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됨	기사 1급은 이미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셈이며 설령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기사 1급을 소지하였다면 그만큼 경력 3년 이상을 쌓아 피나는 노력을 하여 기사 1급을 취득하였으므로 기사 1급이면 학사학위를 소지하였든 아니든 간에 차별이 없어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임. 또한 학사학위도 타전공학사학위를 가진것하고 전문대학이라도 환경전공과를 나왔다면 객관적으로 전문대학 환경전공과가 우수하지 않겠는가 사료되므로 학사학위는 삭제함이 타당함
환경관리인이 현장에서 규정 준수상의 문제점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관련 변경허가 또는 신고	변경허가의 대상이 40% 또는 20% 이상 증설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이 공장 전체에 대한 %인지 아니면 단위별 %인지가 명확치 않아 소관부서마다 적용의 차이가 있음. 무허가 시설의 적발시 법적제재 규정을 보면 조업정지 및 폐쇄, 법정최고의 벌과금(양벌규정) 부과금 등 3중의 조치를 받는 강력한 위반 사항인데 대기업의 경우는 공장전체로 볼 때 하루에도 모타 몇개 정도는 현장 사정에 따라 수시로 관리인도 모르게 바뀔 경우가 있고 배출시설 변경사항도 순식간에 일어날 경우가 있는데 기업측으로 보면 수출량 확보나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됨. 변경의 개념이 동일공장내에서 신설라인일 경우도 적용 되는가 아니면 기존 증설만 적용되는가의 구분.	변경허가 대상시설의 범위 즉, 공장전체인가, 공정별인가, 단위시설별인가, 수질이나 대기에서는 배출량규모인가 등 구체적인 기준 명시. 무허가 배출시설의 단속기간을 매월별로 정하든가, 아니면 당장 오염요인시설이 아니라면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구분	관련 규정	검토의견(문제점)	건의사항
기타 환경관련 규정 등에 반영하여야 할 건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2조	무허가 규제가 엄격하여 산업활동의 저해 초래	무허가 시설이 전체배출허가 사항의 1.0% 미만일 경우 유예기간 부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기본부과금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함 (1ppm초과해도 적용)	각 적용항목별 1.0%초과시 기본부과금 적용기로 함 1.0% 이하의 초과시는 회수마다 가산해서 지정점수에서 기본부과금 적용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방지사설의 설치에 있어서 설계 시공업자 선정에 환경관리인(배출시설관리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타부서에서 선정시공하여 시설만 관리하도록 하는 비합리성이 있고 방지사설을 불합리하게 시공해놓고 관리책임만 지도록 하는 기술이나 운영에 근본적 모순이 있음	방지사설 시공업자의 선정에서 차후 처리문제 또는 법적 기준의 준수에 타당하도록 기술적으로 합당한 업자를 선정하는데 반드시 환경관리인의 확인을 거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방지사설의 부실을 막고 그 시설의 차후 책임을 배출시설 관리인이 지는 확실한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방지사설의 운영관리면의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방지사설 시공업자 선정에서 확실한 관여가 있어야 함.
		대기·수질 환경보전법 등 배출시설에 대한 해설이 없어 인·허가 신청 및 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 많음	대기·수질 등 분야별 배출시설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 각 업체에 배부하여 주었으면 좋겠음
환경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사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80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배출시설 관리인의 교육은 이론적 교육보다 실무 교육이므로 현장경험(10년이상)이 풍부한 전문가가 강사로 배정되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미 알고있는 기초적인 이론교육만으로는 별효과가 없으며 지방에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씩 서울에서 교육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점이 있고 관리인이 일주일씩 회사를 비우면 운전관리의 공백이 생겨 오염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음 특히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의 관리인 교육은 실무경험이 아주 중요함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은 전문업종별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므로서 자주적이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교육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할 것이며 교육담당기관은 환경관리인연합회를 추가 지정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또 지방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자가측정 대행자의 지정에서 지정 수제한이 몇년제 묶여있는데 그 취지는 이해가 되나 매년 기업체 수는 증가하고 측정대행자 수는 그대로 있어 측정대행을 소화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행업자의 불성실성과 횡포의 문제가 있음.	자가측정대행자 지정수를 배출업체수에 비해 하여 적정수를 조정하고 자유경쟁을 하도록 하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함
		기업체에서 관리인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소비관리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관리인의 객관적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음	관리인이 대표자의 결재없이 회사의 환경보전현황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제도(외국의 경우 시행하고 있음)가 필요함
		환경관리인이 소속 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회사마다 실정에 따라 공무과, 총무과, 생산과 등에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 업무수행이 어렵고 또 잔업무를 겸하는 사례가 많음	환경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사업장 내 설치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1) 경직배제 (2) 승진기회 타부서와 균등 (3)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의 경우 매년 융자금 부족으로 중소기업체의 방지사설 투자의 효과적 대치가 부족한 실정.	현재법상 부과금만 지원자금으로 되는데 벌과금까지 전부 지원자금으로 흡수되어 융자금 혜택을 많이 주므로서 환경보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기업체의 생산원가에 폐수처리 등 방지사설운영 및 관리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기업체의 생산원가에 반드시 방지사설운영 및 관리 비용이 반영되어야 확실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식이 실현됨.